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8. 20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8. 20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10. 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욱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 체육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기금심의기구를 설치함과 동시에 기금운용 및 결산시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 목표액 상향 조정(안 제3조제1항)
- 조성기간 및 금액
 - 현 행 : 99년 20억원 목표달성 → 변경 50억원
 - 개 정 :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매년 5억원씩 30억원 추가 조성하여 기금 총액 50억원 조성
- 재적립 범위 확대(안 제3조제2항)
 - 현 행 : 연 이자 발생총액의 20% 이상 재적립
 - 개 정 : 연 이자 발생총액의 20%와 매년도 사용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도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하고 재적립
- 기금운용심의기구 설치(안 제4조제1항)
- 기금운용계획 의회의결(안 제4조제2항)
 - 현 행 : 기금운용계획 의회제출
 - 개 정 : 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함
- 조성된 적립원금은 사용불가 명문화(안 제5조제1항)
- 기금운용결산시 의회의결(안 제6조제1항)
 - 현 행 : 기금결산보고서 의회제출
 - 개 정 : 기금결산보고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함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20억원 조성되었습니까?</p> <p>○ 부천시 재정여건상 50억원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50억원의 가치판단은 어떻게 하였는지?</p> <p>○ 50억원의 이자수입은 얼마인가?</p> <p>○ 기금조성의 장단점을 든다면?</p> <p>○ 우리 시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얼마인가? 그리고 지원대상은?</p> <p>○ 기금조성 이자로 지원하고 또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면 이중 지원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?</p> <p>○ 기금과 예산지원의 이중 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바, 꼭 50억원으로 조성해야 할 이유는?</p>	<p>○ 연말까지 20억원 조성목표임.</p> <p>○ 도체전도 계획되어 있고, 금액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 없어서 6년 간 매년 5억원씩 30억원으로 정하였음.</p> <p>○ 연 10% 정도로 생각하시면 됨.</p> <p>○ 기금은 일단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, 단점은 묶여 있는 것임.</p> <p>○ 체육회, 생활체육회, 학교 등에 연 15억원 정도 지원되며 지원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.</p> <p>○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중 지원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됨.</p> <p>○ 현재까지 20억원이며 이자지출 실적은 없음. 앞으로 6년 후 50억원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 이자를 사용하겠음. 6년 후 약 5억원의 이자로 체육회, 생활체육회, 학교 등에 지원하여 부천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부천시 재정여건상 50억원 기금조성은 너무 많다고 생각됨. 5년 동안 1년 2억원씩 1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, 기금총액을 30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5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205호
의결년월일	99. 10. 12 (제73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0. 8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를 99년까지 20억원으로 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매년 5억원씩 3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을 총 50억원 조성하려는 안으로
- 50억원은 부천시 재정여건상 큰 액수이며 기금조성 후 이자 발생분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단체, 학교 등에 지원하지만 기금 외에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가 있는 바, 이는 이중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,
- 또한 50억원의 금액은 타기금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금액으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부천시 재정도 고려하여
- 조성목표를 99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을 총 30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기금조성 목표액을 99년 20억원 이외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매년 5억원씩 3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50억원 조성하려는 안을
- 99년 20억원 이외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을 총 30억원 조성하는 안으로 조정함.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(기금의 조성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1999년 조성완료된 20억원 이외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총 30억원으로 하며,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단, 출연금을 증액하여

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시 일반회계 출연금 2. 기금의 운용수익금 3. 기타 수입금 등	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1999년 조성완료된 20억원 이외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총 50억원으로 하며, 출연금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단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	제3조(기금의 조성) ①.....2004년까지 10억원을.....총 30억원으로....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1999년 조성완료된 20억원 이외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총 30억원으로 하며,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단,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적립은 매년도 이자발생 총액의 20%를 반드시 제적립하여야 하며,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사용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적립하여 원금화하여야 한다.

③기타 수입금이 있는 경우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계획)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가 심의한다.

②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위원회를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

- 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의 사용) ①기금으로 조성된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.

②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보급사업
- 2.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복지향상 및 육성을 위한 사업
- 3. 체육회 경상운영사업
- 4.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
- 5. 전국, 시·도단위 체육대회와 국제대회(월드컵, 올림픽 등) 개최 및 참가사업
- 6. 체육진흥기금의 재적립
- 7.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
- 8.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결산 및 보고) 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체육대회”를 “기금지원사업자의”로 “체육회는”을 “기금지원사업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부천시체육진흥계획의 수립
- 2.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, 활용
- 3.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